



제 414회 국회(임시회)
제1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예술인 자녀 돌봄 지원 규정 마련〉

■ 김예지의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126155호)

2024. 5.

문 화 체 육 관 광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김원모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I.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김예지의의원 등 11인

나. 발 의 일 : 2024. 3. 14.

다. 회 부 일 : 2024. 3. 15.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한국 사회는 다른 국가에 비해 출산율이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으며, 주요한 원인 중 하나로 자녀 돌봄 등에 대한 부담이 있음. 특히 예술인의 경우, 직업 특성상 일반인이 여가를 즐기는 주말이나 평일 주·야간에 예술활동을 하고 있어 자녀를 돌보는 데에 더욱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음.

현재 정부는 예술인복지재단을 통하여 예술인자녀돌봄지원사업을 시행하여 예술인이 육아로 인해 예술활동에 제약을 받아 경력이 단절되지 않도록 실질적인 기여를 하고 있으나, 해당 사업은 법률상 근거의 부재로 10년 동안 운영중인 사업 예산이 2024년 전액 삭감되는 위기를 겪는 등 사업의 안정성이 낮아 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음.

이에 예술인의 자녀 돌봄 지원에 관한 기본적인 내용을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제도의 정착을 도모하고 예술인들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자녀를 양육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조, 제7조의2 신설).

Ⅲ. 검토의견

1. 개정안의 요지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예술인 자녀 돌봄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도록 하고, 시설 확보 및 업무 위탁 등 예술인 자녀 돌봄 지원에 필요한 내용을 법률에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5항 및 제7조의2 신설).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 ① ~ ④ (생략) <u><신설></u> <u><신설></u>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u>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술인의 자녀 돌봄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u> 제7조의2(예술인의 자녀 돌봄에 대한 지원) ① <u>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예술인의 자녀 돌봄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을 확보하여야 한다.</u> ② <u>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예술인의 자녀 돌봄을 지원하는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8조에 따른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나 관련 기관·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u> ③ <u>그 밖에 예술인의 자녀 돌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

2. 검토의견

현행법 제4조¹⁾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의 범위에서 예술인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과 활동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제4조 및 제10조²⁾를 근거로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는 개인 창작예술인의 복지 증진과 직업 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술인 자녀돌봄 지원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2023년 기준 예술인이 시간제로 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돌봄센터 2개소를 운영하고 있음.

[최근 3년간 예술인 자녀돌봄 지원 사업 현황]

연도	예산 (백만원)	사업수행기관	주요내용
2021	506	한국예술인 복지재단	예술인 자녀돌봄 시설 2개소(마포, 대학로) 운영 *▲총 이용횟수 3,340건 ▲이용인원 150명
2022	581	한국예술인 복지재단	예술인 자녀돌봄 시설 2개소(마포, 대학로) 운영 *▲총 이용횟수 5,422건 ▲이용인원 178명
2023	581	한국예술인 복지재단	예술인 자녀돌봄 시설 2개소(마포, 대학로) 운영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
- 1) 「예술인 복지법」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를 보호하고 예술인의 복지 증진에 관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④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예술인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과 활동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2) 「예술인 복지법」 제8조(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설립 등) ① 예술인복지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제10조(재단의 사업) ①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4. 개인 창작예술인의 복지 증진 지원

개정안은 예술인 자녀 돌봄 지원을 위한 재원 마련 책무와 사업의 법적 근거를 현행법에 명시하려는 것으로, 예술인의 직업 특성상 평일 야간 및 주말에 자녀돌봄 수요가 높아 일반 돌봄시설을 활용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는바, 예술인 자녀돌봄 지원 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사업이 안정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출산 및 육아로 인해 경력이 단절될 위기에 있는 예술인에게 안정적인 자녀 양육 환경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³⁾에서 취지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다만, 현행법 제4조제4항⁴⁾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예술인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과 활동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고 포괄적으로 규정한 취지를 고려할 때, 안 제4조제5항과 같이 개별 사업의 재원 확보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명시하는 것은 예술인 복지 증진을 위한 다른 지원 사업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소지가 있는 것으로 보임.

한편, 현행법 제10조(재단의 사업) 제1항은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수행하는 사업을 각 호에 규정하고 있는데, 예술인 자녀돌봄 지원 사업은 동 조항 제4호의 “개인 창작예술인의 복지 증진 지원”의 일환으로 이미 재단 사업으로 수행되고 있는바, 예술인 자녀돌봄 사업의 안

3) 2021년 예술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예술경력 단절 경험이 있다고 밝힌 응답자(1,564명) 중 9%가 ‘출산/육아’가 예술경력 단절 사유라고 응답하였음.

4) 「예술인 복지법」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 ④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예술인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과 활동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정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개정안의 취지를 고려할 때 예술인 자녀 돌봄 지원과 관련된 사항을 제10조제1항에 재단의 사업으로 추가하는 것도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문 의 처
02)6788-5379